

- 전문가 오피니언 4월 -

# 중국의 모바일 결제 현황과 한국에의 시사점

**현재** 중국을 찾는 관광객들은 마트나 작은 가게, 심지어는 노점상이 판매하는 과일이나 채소 한 다발, 초등학생이 방과 후 즐기는 군것질 비용 모두 그들의 손에 들린 핸드폰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에 또 한 번 놀란다. 상품구매 지금 수단 외에 공과금, 택시요금, 축의금, 송금은 물론, 심지어는 용돈의 지급에도 모바일을 통하여 이루어지니 모든 금전거래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른바 ‘핀테크(Financial + Technology)’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중국정부는 핀테크를 기반으로 하여 IT 강국으로 도약함으로써, 결제방식 플랫폼의 국제적 표준마련과 주도권을 노린다는 것이다. 이러한 중국의 핀테크 활성화와 보급확대에 대해 한국은 부러운 시각을 가지는 한편, 핀테크 발전과 관련하여 내부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문제들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

2011년부터 시작된 중국의 모바일 전자상거래 결제방식은 중국인의 삶은 물론 사회경제 발전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모바일 결제가 막 시작될 즈음에는 현금 없는 결제가 얼마나 오래갈 것인지와 얼마나 위험한지 등에 대한 우려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현재에 이르러 중국의 모바일 결제는 49,423.3 억 위안(2017년)으로 성장하였다.<sup>1)</sup>

모바일 전자상거래 결제방식은 상품의 매매는 물론, 계좌이체도 가능하게 하여 중국인의 생활에 깊숙이 자리 잡아가고 있다. iResearch의 보고서에 의하면<sup>2)</sup>,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중국의 모바일 결제 규모와 성장률은 2013년 모바일 결제액이 2,740억 위안으로 시작하여 2014년 9,264.4억 위안으로 약 238.1% 성장하고, 2015년에는 20,185.7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117.9%로 성장하였다.

1) “중국 2경 원모바일결제시장… 알리페이 ‘독주’”, 아주경제, 2018.4.3.(검색일: 2018. 4. 3.), <http://news.zum.com/articles/44260955>.

2) “迈向移动支付时代：2017年中国第三方支付市场监测报告”，2017.8.18.(검색일: 2018. 3. 28.) [www.sohu.com/a/165667477\\_696675](http://www.sohu.com/a/165667477_696675).

이러한 발전추세는 매년 약 30%씩 성장하여, 2018년에는 모바일 결제규모가 65,189.3억 위안, 2019년은 83,703억 위안, 2020년은 104,879.9억 위안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18년 3월 중국의 연구 통계를 보면, 아래의 <그림 1>과 같이 2016년 1분기에 7.3억 위안의 모바일 결제가 이루어져서 1년 뒤인 2017년 1분기에는 18.8억 위안으로 증가하여 2017년 4분기에는 32.6억 위안으로 마감되었다. 이처럼 중국의 모바일 결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스마트폰의 보급과 인터넷망 구축 등의 IT 플랫폼의 기반 서비스가 확대됨으로써 가능하게 되었다.

상품을 구매하거나 타인에게 송금하는 등의 모든 금융거래가 현금지급방식에서 모바일 지급방식으로 매년 급격하게 발전하는 것은 모바일 결제만의 장점에 기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 전통적 현금지급방식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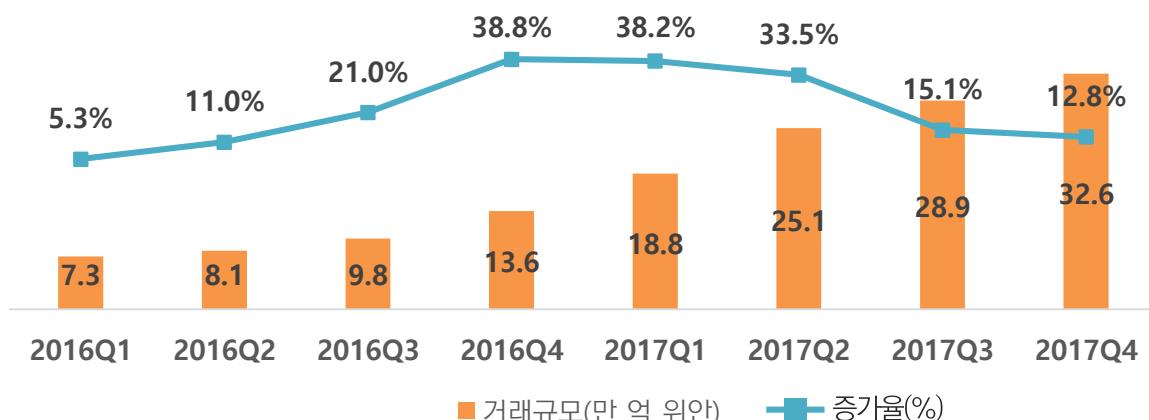
## 국내 전문가가 바라본 중국의 핵심 이슈와 한국 정책에 대한 시사점

김정진

중국 서남정법대학교 교수

**'핀테크 활성화와 보급확대에 대해 걱정하고 있는 韓  
中의 생태구조와 정부지원 및 규제에 대해 탄생지식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그림 1. 2016년 Q1-2017년 Q4 중국 모바일 결제 규모와 성장을



자료:比达网, “2017年中国第三方支付市场发展报告”, (검색일: 2018. 3. 28)  
<http://www.bigdata-research.cn/content/201803/660.html>

현대화와 진보화에 소비자가 직접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의 소비자는 모바일을 통한 지급의 편의성 만큼이나 모바일 결제를 통해 자신이 현재의 IT 발전에 동참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느끼게 된다. 이는 시대적 필연성에 의한 것으로, 만약 현금지급을 하는 경우 자신이 시대적 흐름에 따라가지 못한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는 젊은 세대에서 시작되어 전 세대로 확장되었다. 둘째, 전통적 시간과 공간적 제한의 파괴가 가능하다. 모바일 결제의 편의성은 신속성과 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것에 있다. 모바일을 이용한 결제방식은 현금결제방식에서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시간과 공간적 제한을 받지 않게 된다. 이는 실제로 오프라인의

금융결제를 위협하고 있다. 셋째, 개인 소비자의 일상생활에서의 편리성을 극대화한다. 모바일을 통한 결제는 소비에 있어 장소와 시간을 가리지 않는다. 예를 들어, 대형마트에서부터 노점상까지 소비자가 원하는 장소에서 소비생활을 쉽게 할 수 있으며, 판매상에게는 단지 QR코드만 있으면 모바일로 쉽게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제약도 없다. 즉, 한국의 NFC를 통한 모바일 결제와 같이 따로 기기를 구비할 필요 없이 결제가 가능하다. 넷째, 국가의 화폐 정책에 대한 일정한 영향으로 모바일 결제가 발전하였다. 전통적인 개념의 상거래는 자국 고유의 화폐를 통하여야만 거래가 가능하였다. 하지만, 중국의 물가인상으로 인하여 10위안짜리 미만의 지폐와 동전이 사용되지 않고 버려지거나 단순 보관으로 인하여 유통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화폐 정책 비용도 만만치 않다. 위조와 변조로 인한 화폐의 유통에 따른 사회경제 혼란도 모바일 결제의 활성화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었다.

이와 반대로, 모바일 결제를 통하여 전통적인 결제방식에는 없던 새로운 많은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첫째, 모바일 결제에 대한 안전성 여부이다. 중국의 제3자 전자지급방식에 대한 안전성 문제는 오래전부터 이야기되어 온 것으로, 전자지급방식 자체의 안전성 문제, 개인정보 누출에 대한 안전성 문제, 개인과 기업의 자금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그것이다. 둘째, 제3자 전자지급방식에 대한 법률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한국에서 법률이 모바일 결제의 발전을 막고 있다는 것과는 상반되며, 중국은 모바일 결제 플랫폼의 기반이 되는 제3자 전자지급에 대한 법률 규정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된다. 현재 모바일 결제 등의 관리체계는 주로 은행업무와 관련한 주관부문이나 업계, 협회의 규정에 따르고 있다. 즉, 소비자-모바일 결제회사-은행-판매자(계좌이체 대상자)의 구조를 가진 제3자 결제방식의 구조하에서 이를 직접적으로 통제하고 규제할 수 있는 법률이 없기 때문에 모바일 결제회사와 은행 간, 모바일 결제회사와 은행 및 판매자 간에 발생하는 법률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중국은 제3자 결제방식을 전면적으로 도입하면서 이를 먼저 도입한 국가들을 통해 법률적 제약이 모바일 결제의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는 판단을 하였다. 그리하여 제3자 결제방식에 대한 특정 법률규정을 두지 않고 우선 확대·

보급하고, 차후 법률문제가 발생하면 그때그때 적절한 법률 조치를 취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제3자 결제방식을 통한 모바일 거래가 증가하면서 많은 법률적 문제도 비례하여 발생하였는데, 이에 중국정부는 규범과 새로운 정책으로 대응하면서 문제를 극복하고 있다. 모바일 결제와 관련한 구체적 규범과 정책을 살펴보면, 크게 제3자 결제기관(비은행)의 설립과 운영 및 시스템 관리 감독에 관한 규정과 모바일 결제 사용자의 약용 사례(돈세탁 및 테러자금)에 관한 규정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제3자 결제기관의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한 대표적 법률로는 2010년 6월 14일 중국인민은행이 공포한 ‘비금융기관 결제서비스 관리방법(非金融机构支付服务管理办法)(이하 ‘관리방법’)’을 들 수 있다. 동 관리방법 제3자 결제 시스템에 대한 모법(母法)이라 할 수 있는데, 제1조의 입법취지에서 “지급 서비스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비금융기관 결제서비스 행위를 규범하고 …,”라고 규정함으로써 비금융 결제업계에 대한 관리감독에 주요 목적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모바일 결제업계의 설립과 상호 간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모바일 결제시스템의 발전을 꾀하자는 것이다.

반면, 모바일 결제 소비자의 약용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는 중국인민은행이 2012년 3월 5일에 공포한 ‘결제기관의 돈세탁 방지와 테러자금 유통 방지에 관한 관리 방법 통지(中国人民银行关于印发《支付机构反洗钱和反恐怖融资管理办法》的通知)(이하 ‘방법통지’)’가 대표적이다. 동 방법통지가 제정되기 이전에는 소비자가 비은행 결제기관(알리페이와 위챗페이 등)의 등록과정에서 실명 없이 계정을 개설할 수 있었다. 이는 모바일 결제를 악용하여 국내외에서 돈세탁이나 테러자금으로 유통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는데, 이를 방지하고자, 중국인민은행은 2015년 12월 28일 ‘비은행 결제기구의 온라인 결제업무 관리방법(非银行支付机构网路支付业务管理办法)(이하 ‘관리방법’)’을 제정함으로써 모든 비은행 결제기관에 회원등록 시 실명등록을 하게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실명등록은 특정 비은행 결제기관의 개인정보관리로 인한 개인정보 누출 위험이라는 새로운 문제를 낳았다.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중국은 모바일 결제의 급속한 발전으로 여전히 다양한 법률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돈세탁이나 환치기의 수단으로 사용되거나 심지어는 테러자금으로 유통될 경우에는 편리성을 위해 개발된 제3자 지급 플랫폼의 취지가 도리어 사회의 부정부패의 수단으로 바뀔 수 있다. 이에 대해 중국은 모바일 결제 시스템의 문제 해결에 노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1) 현재의 전자지급에 대응하는 법률과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모바일 결제시스템이 사용되면서 발생한 법적 문제와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을 감안하여 법적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통일된 중앙법률의 제정에 노력하고 있다. (2) 제3자 지급기관 간의 통일된 표준에 기초하여 금융감독기관이 체계적 심사와 관리감독이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3) 개인정보의 안전은 제3자 지급 시스템에 있어 가장 핵심이 되는 문제이다. 즉, 모바일 결제에 있어 제3자 지급기관은 등록된 회원정보를 더욱 강화하는 시스템을 마련한다. (4) 중국내의 모바일 결제 플랫폼의 서비스 내용을 다양화할 예정이다. 현재 중국에서 사용되는 제3자 결제 플랫폼은 대부분이 국내의 은행만 등록하여 사용하거나 국내에서만 서비스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앞으로는 지속적인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과 외국 모바일 결제 플랫폼 간의 협력을 통하여 국제화 할 예정이다.

한국은 세계가 인정하고 있는 IT 강국으로 인터넷 속도와 인터넷망 그리고 스마트폰의 보급률이 매우 높은 국가이다. 하지만, 모바일 결제방식에 있어서는 우리보다 후발주자라 할 수 있는 중국에 비해 많이 뒤쳐져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 원인으로 모바일 결제에 대한 법적 규제와 신용카드 보급에 대한 기반(신용카드와 연동된 혜택 등)이 뿐리 깊게 자리하고 있어 중국처럼 모바일 결제가 빠르게 성장하기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한국 최대 검색포털 기업인 네이버가 여러 지급방식(은행계좌, 체크카드, 신용카드)을 이용하여 네이버페이(naver pay)를 2015년 6월 출시하였다. 네이버페이는 지속적인 자금확대는 물론 온라인 스토어 개설, 백화점, 은행, 보험회사, 증권회사, 신용카드사, 음식점 배달 등과 다방면으로 협력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온라인 구매로 인한 모바일 결제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있다. 또한, 2017년 2월 중국의

알리바바 그룹의 계열사인 앤트 파이낸셜(Ant Financial Services Group, 蚂蚁金服)과 한국의 kakao 그룹이 전략적 협력관계를 체결하고, 자회사 카카오페이(kakaopay) 주식회사에 2억 달러를 투자하였다. 한국 내 오프라인 알리페이 가맹점을 카카오페이지 가맹점으로 전환하여, 알리페이 결제에 카카오페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 카카오페이 가맹점은 오로지 온라인에만 있는데, 이를 바탕으로 오프라인 가맹점망을 빠르게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알리페이(alipay, 支付宝)와 시스템 통합작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결제방식은 알리페이와 마찬가지로 QR코드를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모바일 결제수단의 제3자 전자지급 구조는 현재의 신흥산업으로서 다양한 금융시스템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한국도 세계 금융시스템에 중요한 일원으로서 중국의 모바일 결제시스템의 생태구조와 정부지원 및 규제에 대해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즉, (1) 국내 금융감독의 적절한 규제 완화, 특히 전자지급방식에 대한 금융감독의 통제완화, (2) 모바일 결제의 대중화에 대한 홍보를 통한 점차적인 모바일 결제의 확대와 습관화, (3) 모바일 결제와 다양한 업종의 협력관계 형성을 통한 소비자의 소비영역의 확대와 다양성을 보장, (4) 모바일 결제의 안전성과 편의성에 대한 홍보가 앞으로 우리가 해결하여야 주요 과제이다. 이를 통해 한국 내의 모바일 결제 시스템의 생태환경이 건전하게 발전함으로써 국제적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중국 2경 원 모바일결제시장… 알리페이 ‘독주’”, 아주 경제, 2018.4.3.(검색일: 2018. 4. 3.), <http://news.zum.com/articles/44260955>
- iResearch, “迈向移动支付时代：2017年中国第三方支付市场监测报告”, 2017.8.18.(검색일: 2018. 3. 28.), [http://www.sohu.com/a/165667477\\_696675](http://www.sohu.com/a/165667477_696675)